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5. 14 선고 2020가단14252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4. 23.

판 결 선 고 2021. 5. 14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9,481,437원과 그 중 4,464,024원에 대하여 2020. 8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10. 7. 체결된 증여계약은 9,481,4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C은 원고에게 9,481,4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3. 피고 C에 대한

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배은창

별지